

심 사 보 고 서

◇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 회 운 영 위 원 회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0년 11월 26일

나. 발 의 자 : 윤종호, 강승수, 권재욱, 김낙관, 김영길,
김재우, 김춘남, 안장환, 이지연 의원(9명)

다. 회부일자 : 2020년 12월 10일

라. 상정일자 : 제24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20. 12. 15.) 상정, 질의, 토론
제24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2021. 1. 21.)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김영길 의원

나. 제안이유

- 구미시의회 차원에서 취수원 이전의 문제점과 낙동강 수질개선 방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취수원 이전 대책 방안을 마련하고자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코자 함.

다. 주요내용

- 구성인원 : 7명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
- 활동기간 : 2020. . ~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 활동내용
 - 대구 취수원 이전 반대에 관한 사항
 - 낙동강 수질개선 및 구미·대구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 취수원 이전관련 사례 수집·분석 및 문제점 파악을 통한 정책대안 제시 등

라.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특별위원회)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이 건 호

가. 본 결의안은

-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에 따라 특정 안전에 대한 심사·처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현안인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와 관련하여 구미시의회 차원의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정책 대안 발굴 필요성이 있으므로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특별위원회는 특정 안전을 일시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등에 관하여는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2021. . .

제 출 자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활동기간 변경

- 당 초 : 2020. . ~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 변 경 :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2021년 9월 임시회 종료 시까지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2. 주요내용의 나. 활동기간 중 “2020. . ~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를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2021년 9월 임시회 종료시까지”로 한다.